

발전노동자

- ☐ 민주노조 사수
- ☐ 전력산업공공성 강화
- ☐ 임금체계개악 저지
- ☐ 성과연봉제 저지
- ☐ 해고자 원직복직

박근혜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 시작!

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을 성공(?)시킨 여세를 몰아, '2단계 정상화 대책'을 제시하고 있으며, 여기에는 임금체계 개편(성과연봉제 등), 임금피크제, 퇴출제 등 3대 쟁점과,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민영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.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10/19 국회에서 개최한 공기업 개혁방안 토론회에 이어, 11/13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. 새누리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부채 누적 기관 등 공공기관 퇴출제(해산) 도입, ②자회사의 모회사와 독점적 거래 제한, ③공공기관 지정 확대, ④ 성과연봉제 도입 명시 등의 심각한 내용이다. 특히 50조 1항 1호와 같이 '성과평가에 따른 승급·연봉제'가 법률로 강제된다면, 이후 기재부는 온갖 지침을 남발할 것이다.

현 행	개 정 (안)
제50조(경영지침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(이하 "경영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고, 이를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50조(경영지침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(이하 "경영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고, 이를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1. 조직 운영과 정원·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	1. 조직 운영, 정원 및 성과평가에 따른 승급·연봉제를 포함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

11/19 진행된 '2015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노정실무협의'에서 기획재정부는 3.8%로 알려진 총인건비 증액에 대해 "확실히 결정된 바 없으며,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경우 소요비용은 해당 증액분 안에서 해결해야한다"는, 조삼모사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. 또한 성과연봉제 전면화(별도 지침), 임금피크제 도입(예산편성지침에 반영)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.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1/19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 중단과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, 향후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을 결의했다.



투표 안내문

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·수석부위원장·사무총장 투표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제1기 위원장·사무처장 선거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○ 투표일 : 2014. 12. 03(수) ~ 12. 05(금)

○ 투표시간 : 09:00 ~ 18:00

○ 투표소 : 각 지부에서 지정하는 장소

우리 민주노총과 전국공공운수노조를 이끌어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꼭 시간을 내어 조합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합니다.

1. 투표하시는 방법

- ① 투표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선거인 본인을 확인합니다.
- ② 본인 확인이 끝나면 선거인명부에 서명·날인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.
- ③ 투표용지를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찍혀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. 확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없거나 훼손된 투표용지일 경우에는 투표구선거관위원회에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.
- ④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로 가서 반드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“○”표 또는 “⊗”표의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. **투표구에서 지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**
- ⑤ 기표된 투표용지를 한번 이상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. 단, 기표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주의사항

- ① 선거관리위원이나 투표사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.
-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 가지고 나간 경우 다시 투표할 수 없음.
- ③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음.
- ④ 타인이 대신 투표용지를 받거나 투입해 줄 수 없음.
- ⑤ 선거관리위원 또는 투표사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될 수 없음.
- ⑥ 투표용지 교부부터 투표함에 넣는 것까지 동일한 투표소에서 이루어져야 함.

※ 선거관리규정 제61조(투표구별 투표기간 연장)에 의거 투표구 투표율 50% 미달하는 경우 투표기간 자동연장 됩니다. 단, 투표기간 연장은 12월 9일 18시 까지입니다.

♣ 민주노총 선거 홈페이지 ☞ <http://nodong.org/election>

♣ 공공운수노조 선거 홈페이지 ☞ <http://www.kptu.net/Site/media/nodongvote.asp>